

# 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##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

### 왜 도입이 필요한가?

중앙부처 중심 법령 제·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및 국가·지방 간 갈등 발생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(권한·업무)의 배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, 법령 제·개정에 대한 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는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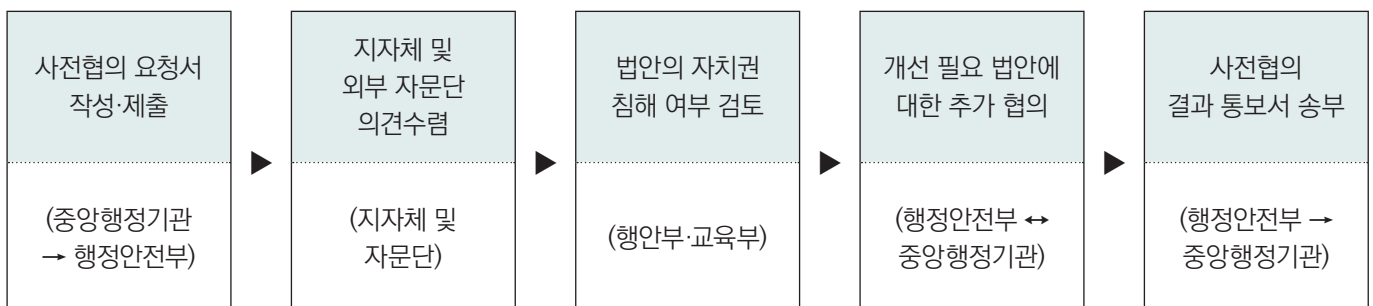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, 중앙부처는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 사례 발생
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도·감독 수단을 신설하거나,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·재정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 발생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·개정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어렵고, 문제 발생 후에야 사후적으로 개선을 요구

-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·개정 과정에 직접적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순 의견 제출만이 가능하나, 그마저도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여건 상 연간 1,700여건에 이르는 제·개정 법령을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- 따라서,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전적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며, 국가·지방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 발생 후에야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

### 제·개정 법령의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검토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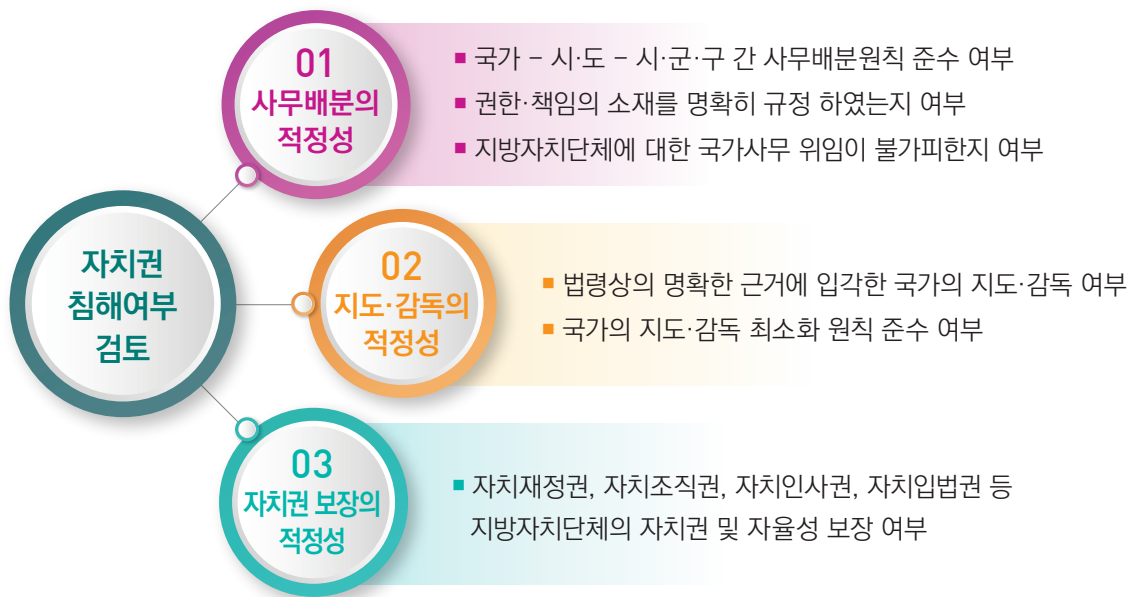
위와 같은 문제에 따라,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2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에게 소관 법령 제·개정시 해당 법령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‘자치분권 사전협의제’를 도입



■ 사전협의의 주요절차 ■

- 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·개정하려고 할 경우, 입법예고 전에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요청
- ② 사전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안전부는 우선 법령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협의체\*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,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안 및 향후 갈등 발생 소지가 있는 법령안 등 전문적·중립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 수렴을 병행 실시
  - \*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, 전국시·도의회의장협의회,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
- ③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협의체와 자문단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
- ④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추가 협의를 실시
- 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없거나, 추가 협의회가 종료된 경우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사전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송부함으로써 협의 절차 종료

**국가·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,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·감독의 적정성, 자치재정·조직·인사·입법권 등 기타 지방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**



- 사무의 신설·변경·폐지 시,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였는지, 국가·지방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는지,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떠넘긴 것은 아닌지 등 검토
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도·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경우, 법률에 지도·감독의 명확한 근거와 한계가 규정되었는지, 지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도·감독 수단을 최소화하여 규정하였는지 등 검토
- 국가사무 수행에 따르는 행·재정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인사 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, 자치사무의 수행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국가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·조직·인사·입법권 침해 여부 검토

## 향후 지방자치권 보장 및 중앙-지방 간 갈등의 사전 예방 기대

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해당 일에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제·개정 법령안부터 적용될 예정

- 시행 이후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안은 성별영향평가, 통계영향평가,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 기존의 사전입법 영향평가 절차와 함께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법령안의 법제처심사 요청 가능

향후,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영역 확대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국가·지방 간 권한 및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▶ 내용문의 : 이동현(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행정사무관, 044-205-3325, leedh86@korea.kr)

지난호 보기 : 마을기업, 사회적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(김상민 부연구위원)

[원문보기](#) ▶

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